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17

2016. 9. 12

국내 생활임금제 현황과 민간확산 방안

최 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생활임금제 현황과 민간확산 방안

	요약	3
I.	국내 생활임금제 현황	4
II.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 가능성	9
III.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 해외 사례 - 영국(런던)	13
IV.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17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059
cbong@si.re.kr

서울시는 본청의 직접고용부문과 투자·출연기관에 이어 민간위탁분야에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가 민간기업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에서,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산에 성과를 보이는 영국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은 이해당사자 간의 노력으로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임금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응용하면, 국내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민간부문 도입은 아직 전무한 실정

생활임금제는 2013년에 노원구와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2015년에는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는 중랑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광주·세종·대전·전남 등의 광역지자체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확산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런던)

생활임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생활임금제는 시민운동에서 출발하여 이제 국가 주도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가 주도 방식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시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노력과 공조에 힘입어 제도가 정착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생활임금재단’은 이 제도의 민간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확산을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의 적절한 공조와 실행노력이 필요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생활임금제 확산 전략의 수립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참여주체들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실행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관련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에서 지원자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구기관은 생활임금제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간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가칭)생활임금민간재단’을 설립하여, 각 주체와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I. 국내 생활임금제 현황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확산 중

총 15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이 생활임금제 시행 또는 도입 예정

- 2016년 6월 기준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광역지자체는 6곳
 - 서울특별시는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
 - 2015년에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2016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생활임금제를 시행
- 2017년에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광역지자체가 더 늘어날 전망
 - 강원도는 2015년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예정
 - 전라북도는 2017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
 - 인천광역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재정난에 따른 예산 미편성으로 실시 지연
 - 충청남도는 2015년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조례에 없는 상황

생활임금의 산출방법과 적용기준은 광역지자체별로 차이(2016년 적용 기준)

-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액 산출방법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산출금액도 차이
 - 최저임금의 130%를 적용한 광주광역시의 2016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7,839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

* '생활임금(living wage)'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을 지칭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라는 의미가 있다.

- 경기도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출하였으며 2016년 시간급 기준 7,030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
-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을 활용한 서울특별시의 생활임금은 2016년 적용 시간급 기준 7,145원
- 서울시 생활임금은 경기도(7,030원)와 대전광역시(7,055원)보다는 많으며, 광주광역시(7,839원), 전라남도(7,248원), 세종특별자치시(7,170원)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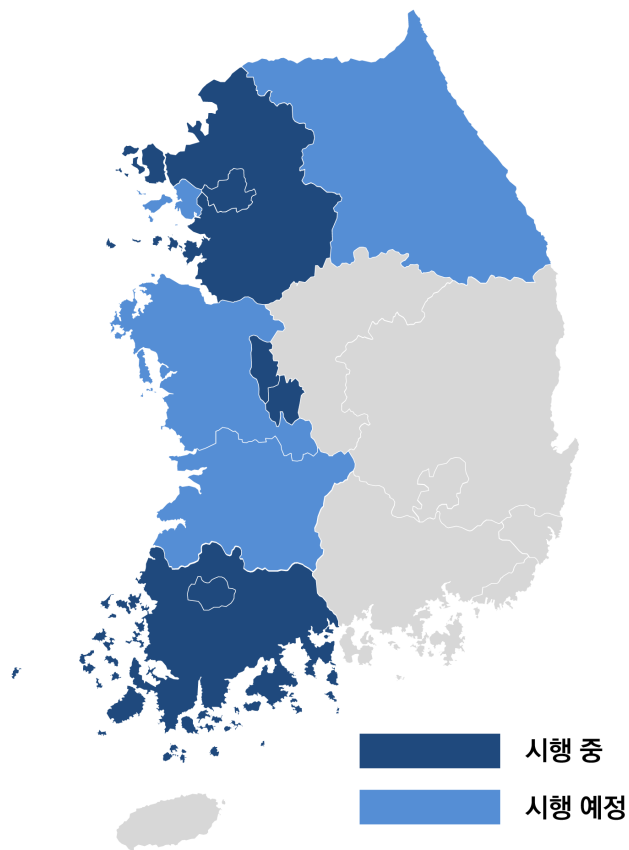


그림 1.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제 현황

서울시는 23개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 시행 또는 도입예정

서울시는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 자치구 대부분이 생활임금제를 도입

- 2016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25개 중 20개
 - 강남구, 중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또는 준비 중
 - 중구와 송파구는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추후 도입하여 시행할 것으로 전망
- 광역지자체인 서울시가 2015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제도 확산 가속화
 - 서울시 본청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이전인 2013년부터 노원구와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
 - 2015년 서울시 본청의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산하 자치구들은 2016년에 생활임금제 시행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도입 움직임

서울시 자치구의 생활임금은 최저 6,934원에서 최대 7,600원까지 다양(2016년 시간급 기준)

- 생활임금 수준은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결정
 - 자치구의 재정상태, 구청장의 의지,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 수렴 등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정형화된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자치구별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

-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20개 자치구 중 19개가 시간급 기준 7,000원 이상
- 2016년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20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6,934원)를 제외한 19곳이 시간급 기준 7,000원 이상을 적용
- 성동구가 시간급 기준 7,600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성북구(7,585원), 노원구(7,370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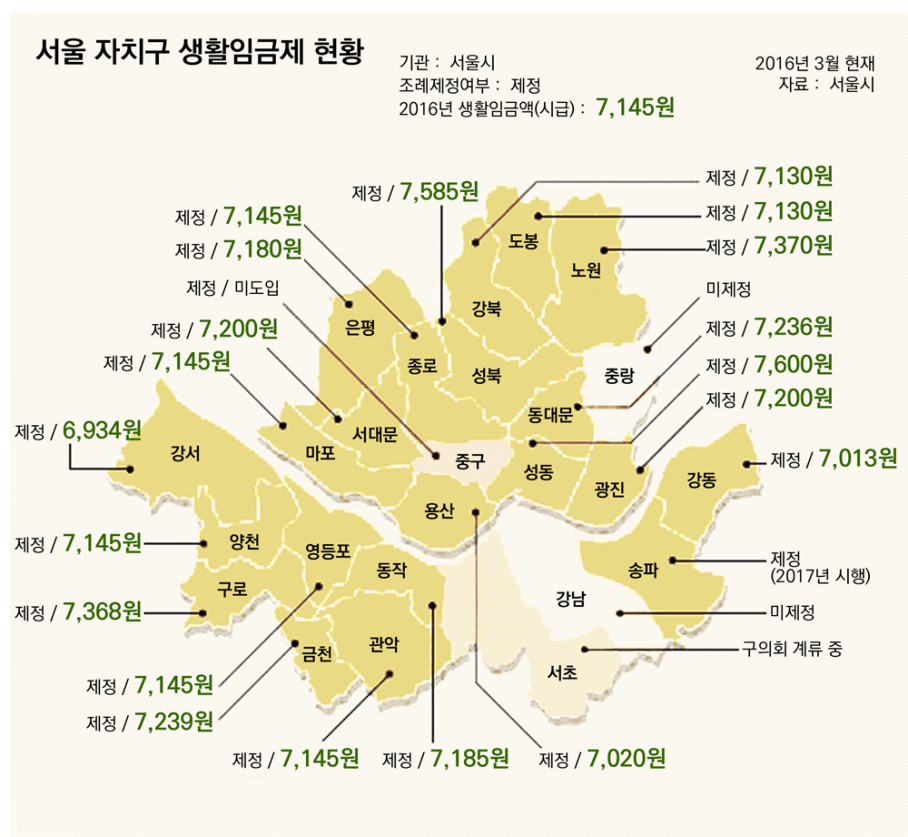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제 현황

자료: 한겨레(서울&), 2016.5.6., “‘최저임금으로는 안 된다’ 생활임금 도입 대세”, 재편집

- 서울시 자치구 중 대다수는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액을 산출
- 서울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 자치구는 종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5개
-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틀은 준용하면서 일부 수치를 조정한 방식을 사용한 자치구는 11개
- 노원구와 성북구는 상용근로자의 급여를 활용하여 생활임금액을 산출
- 동대문구와 강서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

표 1. 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임금액 산정 방식과 금액

구분	서울시와 동일	서울형 3인 가구 지출모델 변형	노원·성북 방식	기타 방식
자치구 / 금액	종로구 7,145원 마포구 7,145원 양천구 7,145원 영등포구 7,145원 관악구 7,145원	용산구 7,020원 성동구 7,600원 광진구 7,200원 강북구 7,130원 도봉구 7,130원 은평구 7,180원 서대문구 7,200원 구로구 7,368원 금천구 7,239원 동작구 7,185원 강동구 7,013원	노원구 7,370원 성북구 7,585원	동대문구 7,236원 (최저임금의 120%) 강서구 6,934원 (최저임금의 115%)

II.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 가능성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인 공공부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유도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생활임금제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
 - 제도 시행 초 직접고용 근로자에 이어 2016년 7월부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부문까지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
 - 2017년 1월까지 민간위탁 사무 1,480명에게 생활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
 -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주력
- 성북구는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성북구는 생활임금조례에서 생활임금제 적용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권고
 - 성북구 관내 대학인 성신여대·한성대와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청소 및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서울시는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와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협력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의 확산을 위해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
 - 2015년 10월 8일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교육감, 구청장협의회 대표 및 구청장들이 참석하여 생활임금 지급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민간부문 생활임금제 확산 방안 모색, 생활임금 캠페인 공동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

-
- 생활임금제 업무협약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
 - 이들 기관 간 업무협약은 생활임금제가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를 넘어 교육청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각 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직접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표하였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산에는 한계가 존재

공공부문을 제외한 순수 민간부문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국내 사례는 전무한 실정

-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사례는 없는 상황
- 국내의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개 중이며, 민간부문에서는 아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
-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존재
- 기업들은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생활임금제 적용이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준다고 인식

민간부문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

- 현 시점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
- 공공부문에서는 조례에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강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전부
- 민간부문에 생활임금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실정
-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민간위탁, 용역 등에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생활임금제 적용이 가능
- 반면, 순수 민간부문에 생활임금제 적용을 강제하게 된다면 시장경제질서를 해친다는 반발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공이 민간과의 계약 시 생활임금제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 잠재력은 존재

국내에서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

- 2014년 12월 국내에 진출한 이케아(IKEA)는 이미 생활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 중
- 이케아는 매장 근로자의 급여를 생활임금액 이상 수준인 시급 9,2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
- 2016년 기준 생활임금액이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8,190원보다 1,010원이 더 많은 수준

해외 사례를 보아도 생활임금제의 성공적인 민간확산 잠재력은 충분

- 해외에서는 생활임금제의 도입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
- 시민운동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의 계기를 마련한 영국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민간으로 생활임금제가 널리 확산된 외국의 사례는 국내의 민간확산 전략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시행
-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은 제도 확산을 위한 재정·연구 지원, 홍보 등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
-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
- 특히, 영국(런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 해외 사례 – 영국(런던)

런던의 생활임금제는 시민단체 주도로 태동

영국은 시민단체 주도로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 런던시 차원으로 확대

- 종교단체, 학교, 노동조합, 지역공동체의 연합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텔코(TELCO, The East London Communities Organization)가 생활임금 운동을 시작
 -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임금제를 제안
 -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해 생활임금캠페인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
- 생활임금제는 2004년 런던 시장 선거를 계기로 시정부 차원으로 확대
 - 2004년 당시 노동당 소속의 런던 시장 후보였던 켄 리빙스턴은 생활임금제를 지지하며 시장에 당선
 - 2005년 초 런던시청 내에 생활임금팀을 설치하여 매년 런던 생활임금액을 산출
 - 2008년 런던 시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보수당 후보였던 보리스 존슨도 런던 생활임금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당선 후에도 제도를 유지



그림 3. 영국 런던의 생활임금제 도입 과정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

영국은 런던과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생활임금제를 시행

- 영국은 물가,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런던과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 산정방법, 산정주체, 주도하는 기관 등에서 지역 간 일부 차이
- 2016년 시급기준 런던 9.4파운드(1만 3,755원), 이외 지역 8.25파운드(1만 2,072원)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2015년 당시 영국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은 법정최저임금을 대체하는 국가차원의 생활임금제를 2016년 4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
- 국가 차원의 생활임금제는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
- 주요 내용은 만 25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16년 4월부터 7.2파운드(약 1만 536원)로 인상하며, 2020년까지는 9파운드(약 1만 3,170원)로 올린다는 계획
- 국가차원으로 도입되면 60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생활임금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을 두 배로 징수하고 15년간 사업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임금제는 또 다른 의미의 최저임금이라는 비판이 존재

- 영국 정부의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생활임금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
- 영국 정부가 제시한 임금 수준은 단순히 자의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
- 생활임금제 적용 연령이 만 25세이기 때문에 연령별 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저연령층의 저임금 노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은 관련기관들의 공조가 중요

영국(런던)의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은 런던시청, 연구기관, 생활임금재단이 주도

- 런던시청은 매년 생활임금액을 발표하며, 제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 런던시청 내 생활임금팀은 매년 생활임금액을 공식적으로 산출
 - 런던시청이 수립한 '2020년 런던비전'에 생활임금 확산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 런던시청 발주공사 참여업체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장
 - 런던시장은 기업인들에게 생활임금제 도입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으며,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에 직접 편지를 발송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을 종용
 - 런던시장은 매년 11월 생활임금주간에 차년도 생활임금액을 직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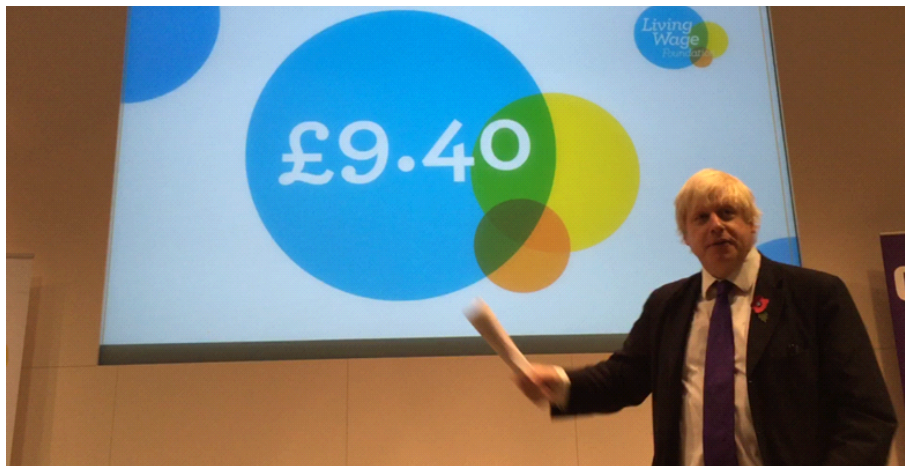


그림 4. 2015년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는 당시 런던시장

자료: Penrose Care, Living Wage Week -Penrose Care raises home care worker wages

- 연구기관은 생활임금제와 관련한 이론기반을 마련하고 성과분석을 담당
 - 연구기관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모델 개발,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성과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논리적 기반을 마련
 - 특히 퀸메리대학은 생활임금운동 초기부터 관련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대학 내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
- 생활임금재단은 생활임금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주체
 - 생활임금재단은 운동을 주도해왔던 시티즌UK와 민간 기업들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1년에 설립된 단체
 - 생활임금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민간기업과 스코틀랜드 생활임금운동본부, 런던시청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인증제도를 시행
 - 생활임금제 도입 기업들에게 생활임금 시행 가이드 제공, 성공적인 운영 사례 공유, 법적 조언 등 각종 지원과 자문서비스를 제공
 - 생활임금제 포럼을 운영하고, 매년 11월 첫째 주에 생활임금 주간 행사를 개최



그림 5. 영국의 생활임금재단 사무실 전경

IV.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참여주체들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실행노력이 수반되어야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공공주도의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유도 전략을 수립
 - 공공부문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이 주도하기 쉬운 사업에 적극 활용
 - 지자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생활임금제 적용을 권유
- 생활임금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설득이 중요하며, 제도의 민간확산에서 전면적용보다는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접근
 -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권유
- 민간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성
 -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각 주체에게는 적합한 역할을 부여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공공주도의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유도 전략 수립	-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제 전면 도입 - 공공부문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활용 - 지자체 보유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에 생활임금제 적용을 권유
점진적 적용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이해당사자 설득 -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권유 -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유도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 관련 주체들의 협력체계 정비 필요 -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을 위한 적합한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 확립

공공주도의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유도 전략을 수립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

-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생활임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
 - 대다수 시민은 민간위탁과 공공계약을 큰 틀에서 공공부문이라고 인식
 - 현재 생활임금제 적용이 본청, 산하기관, 민간위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추후 용역분야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 서울시와 자치구의 시비·구비 매칭 사업에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공공부문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활용

-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굴
 - 생활임금 업무협약의 결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도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등 서울시가 적극 노력한다면 유관기관에 도입도 가능
-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민간부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 지자체 관내 소속의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비영리재단 등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
 - 법조계(법무법인 등), 의료계(병원, 제약업 등), 교육관련(대학 등)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 사업체의 생활임금제 동참을 유도

지자체 보유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에 생활임금제 적용을 권유

- 국공유지 등의 자산을 이용해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요청
 -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조건에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 적용의무 항목을 추가

점진적 적용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설득

- 생활임금제 도입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해외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이해당사자를 설득
-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실증연구로 제시*
- 생활임금제 도입은 지자체 예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제도를 도입한 고용주는 노동비용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경험**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고용주는 계약비용 절감효과, 직원들의 업무성과 신장,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편익을 얻었다고 분석***
- 샌프란시스코 공항 경비인력의 이직률은 95%였으나 생활임금을 지급한 후에 19%로 감소****

* Flint, E., Cummins, S. and Wills, J., 2013,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he London Living Wage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Low-wage Service Sector Employees: A Feasibility Study", *Journal of Public Health*, 5: 1~7.

** Thompson, J. and Chapman, J., 2006, "The Economic Impact of Local Living Wages",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170.

*** Wills, J. and Linneker, B., 2012,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London Living Wage", *Trust for London*.

**** Reich, M., Hall, P. and Jacobs, K., 2005, "Living Wage Policies at the San Francisco Airport", *Industrial Relations*, 44(1): 106~38.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권유

- 대기업, 업종 내 선두기업 등을 중심으로 우선도입을 유도
 - 재벌그룹 계열사, 대기업, 업종 대표기업 등 주요 기업들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
 - 특히 관급공사 참여 등 공공부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영향력이 큰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이 생활임금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유도

-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이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에 동참하도록 권유
 - 일부 다국적기업은 해외본사에서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
 -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 시행 시 홍보효과와 함께 긍정적 이미지의 구축이 가능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성

관련 주체들의 협력체계를 정비

-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성이 필요
-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간부문에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
- 생활임금제를 이끌어 나갈 주체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에도 영국의 생활임금재단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임금관련기구(가칭 생활임금민간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



그림 6.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개념도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을 위한 적합한 역할 분담과 공조체제 확립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을 위한 실무지원에 주력하고, 서울시장은 이에 동참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관련 주체들의 사업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실무적인 지원업무(관련 법·제도 개선 노력, 예산지원, 홍보, 캠페인 등)와 함께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 민간기업 등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 소재 기업들에게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
 - 제도의 민간확산을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지속적인 관심 표명,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노력, 활발한 활동 등이 필수요건
- 연구기관은 생활임금제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수행
 - 연구기관은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당위성,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 민간부문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성과관련 연구 수행이 필요
 - 생활임금제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

- ‘(가칭)생활임금민간재단’은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한 핵심 주체
- (가칭)생활임금민간재단은 생활임금제 전반에 대한 관리와 실행을 담당하며,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 생활임금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생활임금제와 관련한 인증제도 운영, 정보구축,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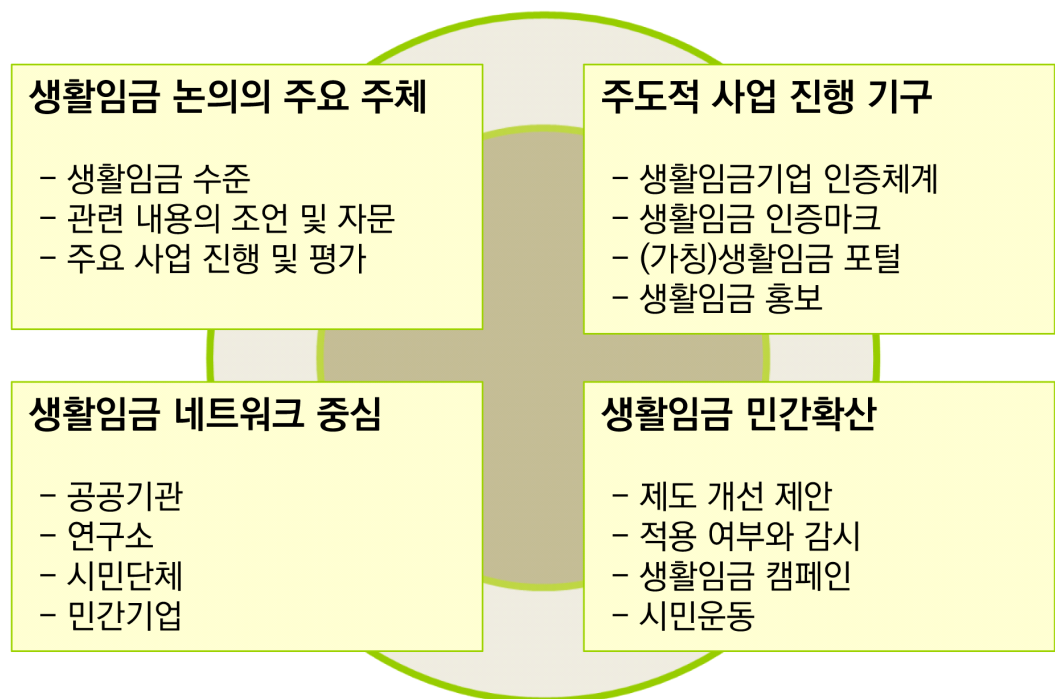


그림 7. (가칭) 생활임금민간재단의 역할